「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7억5천만 유로)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는 **'22.6.30.**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말 법인 기준)

(예시) 12월말 법인은 FY 2020 연결매출액이 1조(7억5천만 유로) 초과 시, FY 2021에 대하여 '22.6.30.까지 제출

이에 제출 의무자, 제출 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본인이 제출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무자

◦ **(국내의 최종모회사)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의 최종모회사**

◦ **(국내 관계회사)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최종모회사(A)**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관계회사** 중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법인**

① A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② A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 중요성을 이유로 ①에서 제외된 법인

③ ① 또는 ②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관계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의 법인(또는 국내사업장)이 대표 제출가능

제출방법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관할세무서 **직접 제출**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유의사항

해외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국가별보고서도 미제출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 문의

서울청	02-2114-2961(2959)	중부청	031-888-4956
인천청	032-718-6485	대전청	042-615-2475
광주청	062-236-7474(7476)	대구청	053-661-7474
부산청	051-750-7438(7440)	-	-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제도와 관련한 서식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접속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참고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홈택스 가이드**

참고 1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규정(요약)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의 최종모회사

* 다국적기업그룹 : 서로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

○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최종모회사(A)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관계회사

① A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② A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 중요성을 이유로 ①에서 제외된 법인
③ ① 또는 ②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 **(제출의무 면제)**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아래의 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 **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 및 제출기한**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A)는 A 및 A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을 구성하는 관계회사들에 대한 국가별 ①수익내역, ②세전 이익 및 손실, ③납부세액, ④자본금, ⑤주요 사업내용을 포함한 국가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 **(제출기한)**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관계회사가 우리나라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과태료)**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하고 **국가별보고서**도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3천만원)** 부과

< 관련법령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6조

참고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홈택스 제출요령**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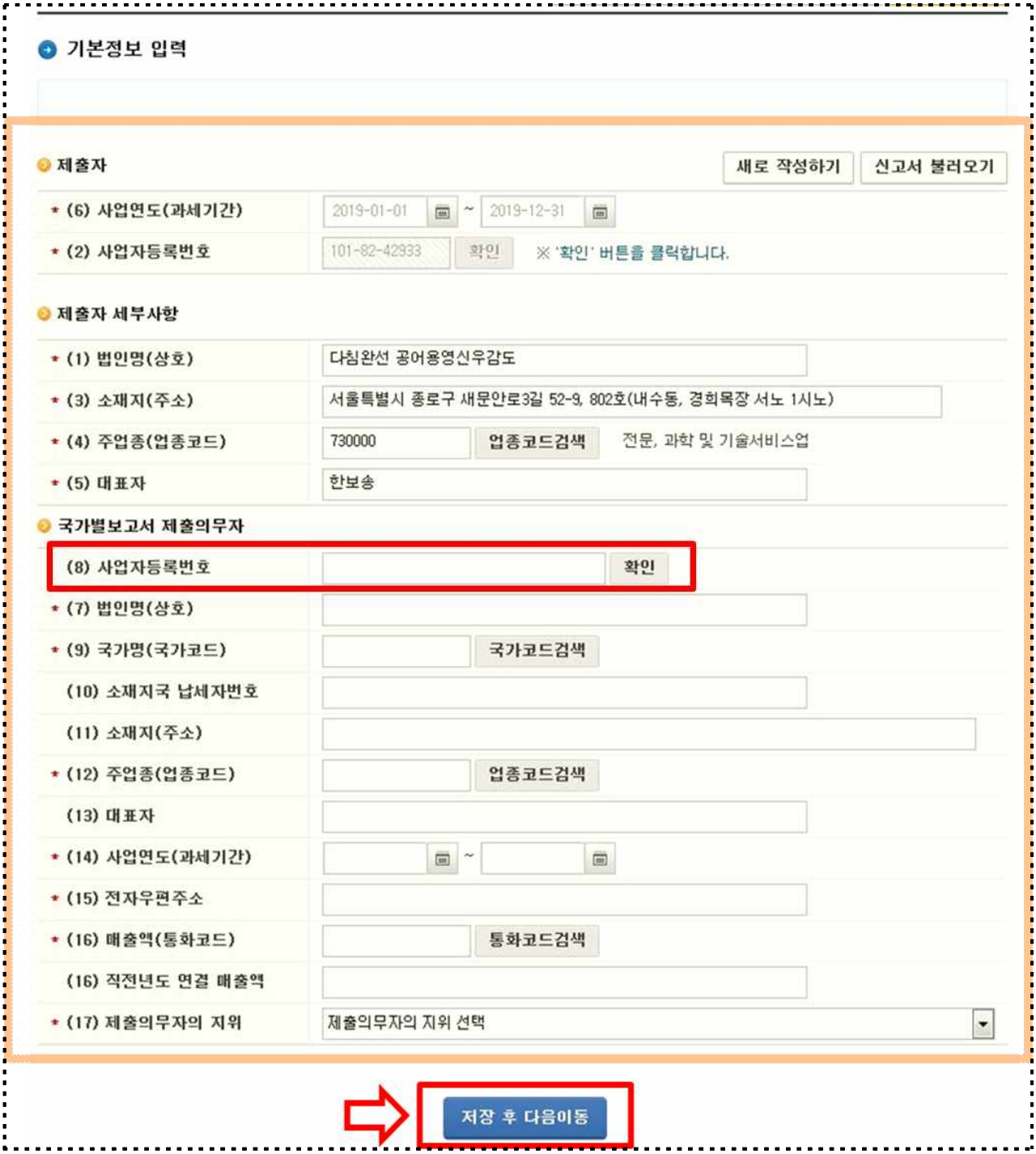
3.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제출자와 제출의무자 불일치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인적사항에 최종 제출자 인적사항 입력

❑ 제출자와 제출의무자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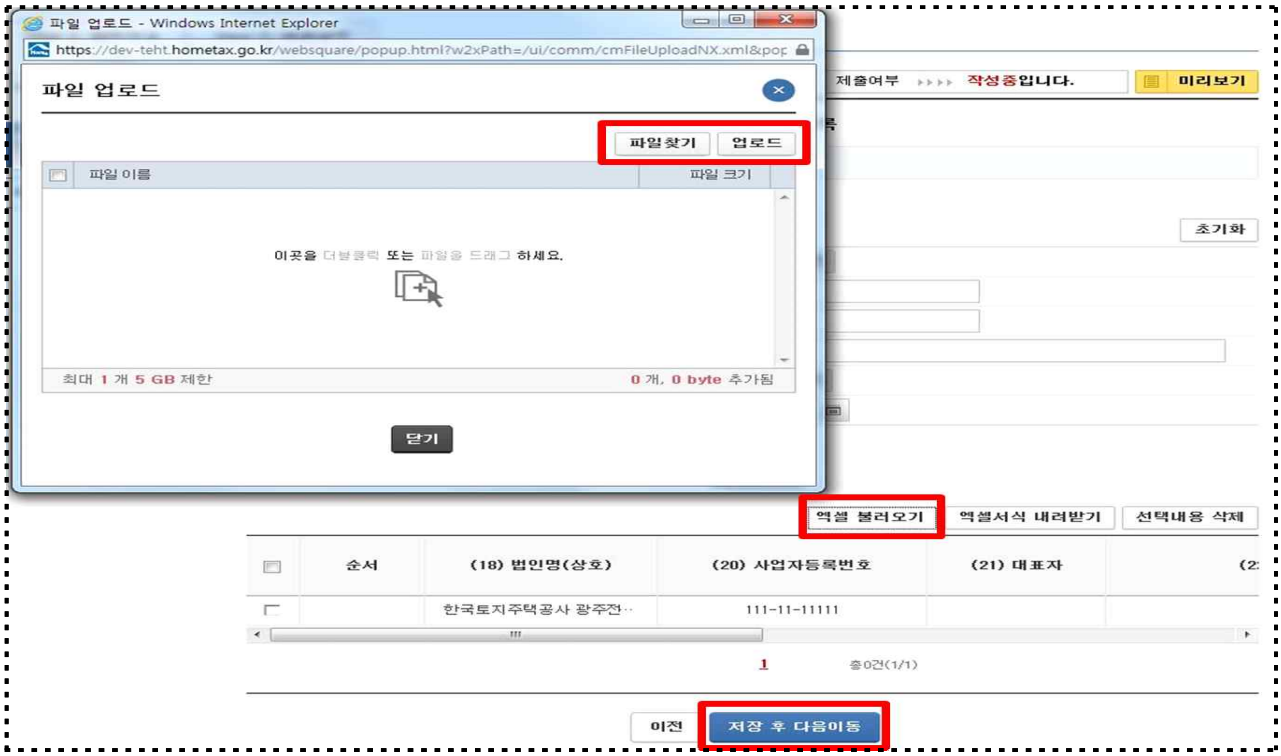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인적사항에 (2)란 사업자의 인적사항 입력



4.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하나씩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 모든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입력할 납세의무자가 많으면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 가능



5. 신고자료 입력완료 후 『제출하기』 클릭하여 최종 제출



❑ 접수완료 문구 확인(접수증 출력도 가능하며, 출력하지 않아도 접수는 완료)

